충신동 이유준 / 비대위 추진위 통합 협의서

○ 통합 목적

-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양 추진위 통합
 - ※ [추진위] 명명 :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진행을 위한 충신동 주민들의 (사적)활동 단체

○ 통합내용

- 1. 추진위 대표는 이유준 씨로 한다.
- 2. 추진위 위원은 충신동 소유자면 누구나 가능하다.
- 3. 추진위 관리규약 규정 및 공증 진행
 - ▶ 관리규약 필요성
 - 직전 통합추진위는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 없이 개별 판단에 따라 운영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**추진위가 다시 분리되면서 통합 실패**하였음.
 - 과거의 통합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위해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화된 관리규약 필요.
 - ▶ 관리규약 공증 진행
 - 추진위 활동이 재개발 구역계에 속하는 약 750여 가구의 자산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업무임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의 영속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▶ 관리규약 초안 첨부
 - 첨부된 관리규약은 초안으로 양 추진위 검토 후 수정/보완 한다. (공증 후 수정불가)
- 4. 취진위 사무실
 - ▶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대로변의 기존 추진위 사무실을 통합추진위 사무실로 한다.
 - ▶ 주소 : 서울 종로구 율곡로 245 1층

○ 통합 합의

양 추진위는 통합에 찬성하며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2024. . .

 대표
 이 유 준
 서명

 대표
 김 하 율
 서명

충신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위 관리규약

본 규약에서는 의사결정, 직책별 정의(역할), 주요 문서관리 등을 규정하며 공증절차를 진행한다. 내용의 수정/보완은 공증 전까지 가능하다.

(단, 관리규약의 수정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고,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원을 위한 단기 조직임을 감안하여 수정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.)

제 1 조 주요 사항 의사결정

1. 발의 : 추진위원 10% 이상이 발의

2. 결정 : 추진위원 50% 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 50% 이상 찬성 시 결정

제 2 조 각 직책별 정의(역할)

- 1. 위원장
 - 가. 추진위를 대표하며 취진위가 갈등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조율을 한다.
 - 나.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주재(진행)한다.
 - * 회의 진행 방식: 사전 공지 후 온라인(영상회의), 오프라인 회의 진행
 - 다. 재개발 진행현황 보고
 - ① 주간 보고 : 주 1회 소유자 단톡방에 주간 보고
 - ② 월간 보고 : 월 1회 소유자 단톡방에 월간 보고
- 2. 부위원장 :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 대행
- 3. 총 무
 - 가. 추진위 예산 집행 및 관리
 - 나. 월 1회 예산 집행 현황을 소유자 단톡방에 공지한다.
- 4. 감 사
 - 가. 조직 운영 및 예산 관리 등이 합리성과 불법성을 감사한다.
 - 나. 월 1회 감사 보고서를 소유자 단톡방에 공지한다.

- 5. (일반 및 직책) 추진위 위원
 - 가.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 징구, 추진위 운영 등 모든 추진위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.
 - 나. 주요 사항 의사결정을 발의할 수 있다.

제 3 조 문서관리

- 1. 동의서 (소유자 서명 후)
 - 가. 동의서는 공문서로 주민 모두의 자산이다. 임의 반출을 금지하며 분실 시에는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.
 - 나. (반출, 분실)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찰 신고/고발을 할 수 있다.
 - 다. 보 관 : 추진위 사무실 1번 금고에 보관
 - 라. 반 출
 - 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반출 결정 (추진위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)
 - ② 반출 후 소유자 단톡방에 반출경위 및 위치 공지
 - 마. 관리일지: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별도 보관
 - 바. 관리자 : 홍길동
- 2. 연번 동의서 (소유자 서명 전)
 - 가. 상 동
 - 나. 상 동
 - 다. 보 관 : 추진위 사무실 2번 금고에 보관
 - 라. 상 동
 - 마. 상 동
 - 바. 상 동

제 4 조 추진위 가입, 탈퇴, 재가입 및 제명

1. 가 입 : 충신동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.

2. 탈 퇴 : 추진위원 본인의 자유의사로 언제나 탈퇴 가능하다.

3. 재가입 : 추진위원 50% 이상 참석 50%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.

4. 제 명 : 신속통합재개발에 반하는 활동을 한 자로 추진위원 60% 이상 참석 및

참석인원 70% 이상 찬성 시 제명할 수 있다.

제 5 조 추진위 창립 및 해산

- 1. 추진위 창립 : 이유준 씨 추진위, 주민 비대위 추진위 간 통합에 합의한 날을 창립일로 한다.
- 2. 추진위 해산 :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지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추진위원 회의를 거쳐 50% 이상 참석 50% 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.

※ 해산 조건 미 충족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결과 발표 후 1개월 후 자동 해산한다.